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03일

3.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의 시정 및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 신설
-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4.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 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함(안 제6조)
-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와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음¹⁾
- 우리도의 여성 사업체수는 2017년 기준 총 47,226개로 전체 사업체 111,738개 중 42%를 차지하고 있음
- 도내 전체 여성사업체 중 중견·대기업은 4개이고, 중소기업이 47,222개이며,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42,975개, 91%)에 해당되며, 업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업’(17,233개, 36.5%)과 ‘도·소매업’(12,623개, 26.7%)이 전체 여성사업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여성 기업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규모면에서 영세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업종도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여성 창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됨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 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충청북도 여성기업 현황]

• (기업규모) 소상공인이 전체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개사, %)

구분	전체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소 계			
'17년 (여성)	47,226 (100.0)	42,975 (91.0)	46,806 (99.1)	416 (0.9)	47,222 (100.0)	4 (0.0)
'17년 (전체)	111,738 (100.0)	98,217 (87.9)	109,198 (97.7)	2,399 (2.1)	111,597 (99.9)	141 (0.1)

• (업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경쟁포화 업종의 비중이 높음 (단위 : 개사, %)

구분	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17년 (여성)	47,226 (100.0)	17,233 (36.5)	12,623 (26.7)	5,466 (11.6)	2,517 (5.3)	2,676 (5.7)	6,711 (14.2)
'17년 (전체)	111,738 (100.0)	26,253 (23.5)	28,842 (25.8)	9,843 (8.8)	4,258 (3.8)	12,107 (10.8)	30,435 (27.3)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충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전문 기관에 대한 위탁 및 경비지원을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우선 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도내 여성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약166조)의 7.7%를 차지하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약 2.7억원으로 전체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 14.8억원 보다는 매우 적은 수준임('17년 기준)

[여성기업 경제적 기여도]

- (매출) 여성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7%를 차지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16년			'17년		
	기업수	매출액	평균 매출액	기업수	매출액	평균 매출액
전체	110,764	1,603,894	14.4	111,738	1,656,233	14.8
여성기업	46,385	119,009	2.5	47,226	126,976	2.7
(비중)	(41.9)	(7.4)	(17.7)	(42.2)	(7.7)	(18.2)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영환경에서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의 여성기업 우대 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해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